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3. . .
발 의 자	양진오 의원 외 10명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진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3. . .

발 의 자: 양진오 · 김영태 · 김원섭 ·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 정지원의원(11명)

1. 제안이유

국가와 시(市)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유공자를 추모·선양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와 경의를 표함으로써 국가와 시에 대한 소속감을 증대시
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순조당 감면 대상 신설 (안 제10조제2항제4호)

나. 순조당 내 유공자 별도 봉안 구역 신설 (안 제19조의2)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3조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3) 「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 제3조, 제11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다.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유공자 등 봉안 구역) ① 시장은 승조당 내 국가와 시의 발전
에 기여한 자들을 위하여 별도의 봉안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봉안구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단, 유족과 가족
은 제외한다)

2.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수상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생략)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조당 사용료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9조의2(유공자 등 봉안 구역)
	① <u>시장은 승조당 내 국가와 시의 발전에 기여한 자들을 위하여 별도의 봉안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른 봉안구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단, 유족과 가족은 제외한다)</u>
	2. <u>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수상자</u>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

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하략>

□ 「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

제3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구미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구미시가 고향인 출향인사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전체 시민의 귀감이 되는 우수한 시민 중 3명 이내로 수여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이 이에 해당할 때에도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미대상은 본인의 명의로 유족대표에게 한다.

제11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1. 시의 공식식전에 참여

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의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승조당 사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 (안 제10조제2항제4호)
- 승조당 내 유공자 별도 봉안 구역 신설 (안 제19조의2)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 1.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유공자 별도 봉안 구역 신설을 위한 비용이 3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 안치함 512기(개인단 336기, 부부단 176기) 설치 : 43,264,000원
 - 유공자 별도 봉안 구역 조성 : 23,000,000원(추정)
 - 산출근거
 - 개인단 336기 x 73,500 = 24,696,000원
 - 부부단 176기 x 105,500원 = 18,568,000원
- 조례안제10조제2항제4호 승조당 감면 대상자 확대에 따른 세입의 감소와 조례안 제19조의2 승조당 내 유공자 별도 봉안구역 신설에 따른 설치비용에 대한 소요는 예상되나 추후 수요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구체적인 재정의 추계는 어려움

4.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팀 김시훈(054-480-5163)